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-1호

Feb. 2024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 마련 (23.12.28.) -

1. 개요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

2. 주요 내용

[1]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

- 과잉진료·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①고령자(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) 대상 수술, ②단초점 렌즈(건강보험 급여항목)를 사용한 수술, ③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
-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, 합병증·부작용 발생, 他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*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
 - * 예)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,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, 他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 등(단, 경미한 합병증·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)
-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기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과거 청구 건(21년~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)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

[2] 취약계층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업권 추진사항

-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(수술일 기준) 이상 고령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*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 예정

* 백내장 과잉진료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既수술건(21년~정비방안 발표일 이전)에 대해서만 적용

(원문 링크)

<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lId=132618&menuNo=200218>